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제20류 주 규정 해설

오수교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위원



1. 개요

이 글은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¹ 제20류 주(Note)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고 또한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관세율표 제20류는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이 제2001호부터 제2009호까지 총 9개 호가 다음 표1과 같은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제품의 주재료가 되는 신선 상품의 대부분은 채소(제7류)와 과실·견과류(제8류)가 차지하며, ‘식물의 그 밖의 부분’에는 돼지감자와 고구마(제0714호), 감귤류·멜론의 껍질(제0814호), 향신료(예 : 제0910호의 생강), 감자가루(제1105호), 채두류나 과실·견과류의 가루(제1106호), 땅콩(제1202호)이나 해바라기 씨(제1206호), 의료용 식물(제1211호의 안젤리카) 등이 포함된다.

1) 한–미 FTA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말한다.

2) 종전 ‘저장’이란 용어를 2013년도 관세율표 개정에서는 ‘보존’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춰 표기한다. 참고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각종 FTA협정과 관세율표의 용어 표현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저자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사용하는 관세율표에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현행법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모든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관세율표가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 맞춰 다음 표2도 현행 관세율표의 표기 내용에 맞췄다.

즉, 제20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²처리한 상품이 포함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상품이 해당하는 류(Chapter)나 호(Heading)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에 한정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³

제20류의 9개 호 중에서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제20류 주 규정의 적용에 직접 관련되거나 쟁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1 관세율표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의 분류체계

번호	품명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상품은 제외한다)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상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설탕을 입히거나설탕에 절인 것]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가목에 따르면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는 제20류에서 제외한다.

2. 채소(제7류)나 과실과 견과류(제8류)에 허용되는 조제나 보존 처리 방법

주 규정의 해석에 앞서 제20류 조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채소(제7류)나 과실과 견과류(제8류)에서 허용되는 조제나 보존 처리 방법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과 다르게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경우에는 주로 제20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은 ‘냉장한 것’과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냉장한 것

상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C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상품(예 : 감자)은 그 온도가 영상 10°C 정도로 강하하여 유지될 때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냉동한 것

상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 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

③ 건조한 것

상품의 내부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여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햇빛에 의하여 직접 건조하거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탈수·증발·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④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보존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것(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위 ④항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0711호로, 과실과 견과류는 제0812호로 각각 분류한다. 이들 호로 분류되는 상품은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염수와 같은 보존 용액에 담겨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큰 통(cask)이나 배럴(barrel) 또는 트레이(tray)나 오픈형 용기(open-lath type container)에 포장되어 있으며,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20류로 분류된다.



▲ 큰 통(cask)



▲ 배럴(barrel)

- 4) 일반적으로 직접 식용에 적합한 상품은 밀폐형의 작은 유리병이나 캔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있어 구분할 수 있다.

3.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제20류 주 규정 해설

이 협정 제20류 상품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은 주 규정과 해당 호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2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Chapter)이 적용된다.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신선 상품을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품목별원산지 기준에서 요구하는 세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 류에서 규정한 주에 해당하면 2단위 류(Chapter)가 변경되었더라도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므로 이 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제20류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관세율표 제20류의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 부분의 조제품
주	냉동하거나, 물·간수(염수) 또는 친연 주스에 넣어 포장(캔에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건조 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냉동·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부터 제2008호까지에 해당하는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복숭아·배 또는 살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과실과 혼합되어 포함되어 있는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상품으로 취급된다.
2001–20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과 제0701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⁵⁾ 에서 제2001호부터 제200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⁶⁾
20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제1202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008.19호부터 제20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2008.19–20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008.19호부터 제20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2009.11–2009.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제0805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009.11호부터 제2009.39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2009.41–2009.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에서 제2009.41호부터 제2009.80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5) '제0701호[감자(신선하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 협정 품목별원산지기준 제1부 일반주해 제1조다목에 따라서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세번(예 : 제0701호)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6) 이 협정 품목별원산지기준 제1부 일반주해 제1조나목에 따라서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 부분의 조제품
2009.90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에서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0류 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상품(제2009.11호부터 제2009.39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제2009.80호에 해당하는 크랜베리 주를 제외한다)에서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크랜베리 주스 혼합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0류 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상품에서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하나의 비당사국의 단일 주스 성분 또는 주스 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p>

이 주 규정에 따라 2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Chapter)을 적용하지 않는 조제나 저장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냉동한 것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채소나 과실과 견과류를 냉동한 것을 제7류나 제8류에서 허용하는 조제나 보존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신선한 채소(제7류)나 과실과 견과류(제8류)를 냉동하였다하여 류(Chapter)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향신료, 갑자기루(제1105호)나 과실과 견과류의 가루(제1106호) 또는 제12류(예 : 제1202호의 땅콩이나 제1211호)⁷⁾의 특정 상품이 냉동한 것을 조건으로 제20류로 변경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⁸⁾ 이런 경우에는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제2004호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것은 단순히 냉동한 상품이 아니라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2005호로 분류되기 위한 조제나 보존 처리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냉동한 것이므로 다음의 (2)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 조건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7)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호의 용어에서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냉동하여 제1211호로 분류할 수 없다면 이 경우는 주로 제2008호로 분류한다.

8) 이 글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선 상품을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물·간수(염수) 또는
천연주스에 넣어
포장(캔 포장을
포함한다)한 것**



▲ 염수에 넣은 올리브



▲ 사워크라우트

이 주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005호와 제2008호로 분류되는 일부 상품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2005호에서 직접 관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올리브

소다용액(soda solution)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장기간 침지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올리브를 단순히 일시적으로 염수에 보존 처리한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한다)

② 사워크라우트(sauerkraut)

양배추를 작게 절단하여 염(소금)에 절여서 일부를 발효시켜 제조한 것

이 규정에 따라 채소인 올리브(신선한 올리브는 제0709호에 해당한다)를 소다용액과 같은 화학물질이나 시럽 또는 알코올과 같은 용액에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것이 제20류로 변경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그러나 물·간수(염수) 또는 천연주스에 넣어 포장 한 것은 비록 그러한 조제나 보존 처리에 따라 제20류로 변경되더라도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제2005호의 올리브의 경우에는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한 것⁹은 원산지 상품으로, 염수에만 침지한 것은 비원산지 상품이 된다.

다만, 사워크라우트와 같이 염(소금)에 절여서 일부 발효된 것까지도 이 주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우선 염(salt)에 절인 것은 염수(brine)에 넣은 것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발효도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김치와 유사한 상품이라 생각하면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또한 사워크라우트는 발효 중에 주로 향신료로 사용되는 캐러웨이 열매·후추열매·노간주나무열매 등을 첨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데 의견이 없을 것이다.

9) 신선한 올리브는 맛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염수나 식초, 기름, 물, 소다용액(알칼리용액)에 수개월 저장하여 쓰고 떫은맛을 뺀 후에 식용한다.

참고적으로 채소나 과실과 견과류 등을 물에만 보존하여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양파나 파는 매운 맛을 빼거나 또는 도라지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껍질을 벗긴 사과나 밤은 변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에 담그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제나 보존 방법이 제7류나 제8류 또는 제12류 등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방법이라 하여 제20류로 변경되었더라도 이 경우에는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이 된다.

다음으로 제2008호에는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보존 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과 종자를 포함한다)과 같은 상품이 분류된다.

이 사례도 앞에서 설명한 제2005호의 채소와 같으며, 시럽·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과 종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HS 해설서에서도 제2008호에 분류되는 보존 처리방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주의 규정을 정한 것은 물·간수(염수) 또는 천연주스에 넣어 포장(캔 포장을 포함한다)한 것에만 한정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제7류나 제8류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조제나 보존 처리된 것은 이를 밀폐용기나 캔에 포장하였다하여 제20류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HS 해설서 제7류와 제8류의 종설에서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설령 포장만으로 세번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이 되지 않는다.

(3) 건조 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 인 공정을 포함한다)

HS 해설서 제2008호에 열거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이 특례 규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사례라 여겨진다.

- ❶ 아몬드·땅콩·빈랑나무(areca)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함유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 ❷ 볶은 땅콩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로 구성된 “땅콩버터”(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볶은 아몬드



▲ 볶은 땅콩



▲ 꿀 시럽과 소금을 입힌
볶은 땅콩



▲ 소금을 입힌
볶은 마카다미아



▲ 꿀 시럽을 입힌
볶은 마카다미아

즉 제8류나 다른 류(예 : 제11류·제12류 등)에 해당하는 식용에 적합한 견과류 등과 같은 상품을 건조 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것은 비록 이러한 공정에 따라 제20류로 변경되더라도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주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볶는 중이나 볶은 후에 ‘식염·향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예 : 설탕이나 꿀)을 함유하거나 입힌 것’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라 할 수 있다.

물론 품목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볶은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을 첨가하거나 입힌 것도 모두 제2008호로 분류된다. 그러나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 부분은 분리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즉, 볶은 것에 식물성 기름을 첨가하거나 입힌 경우에는 이 주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 외의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입힌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물론 그 양의 많고 적음이나 실질적 변형 여부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으나, 첨가하거나 입힌 것이 관능검사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이나 조제나 보존 처리된 상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같은 의견에 따라 위 ②항이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페이스트로 만든 “땅콩버터”는 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원산지상품이 된다. 이 경우도 분쇄라는 추가적인 공정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1항부터 3항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추가적으로 ‘냉동·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거친 상품이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이와 같이 해석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미 FTA 협정은 다른 FTA 협정과 달리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 일반주해 제1항사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불인정 공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¹⁰

이 일반주해 제1항사목이란 ‘제1류부터 제40류까지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1류부터 제40류까지의 상품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류나 호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하나의 예를 들면 비료(제31류)는 4단위 호(Heading)의 변경기준(CTH)이 적용되는데, 질소비료(제3102호)를 단순히 용기 한 개의 총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제3105호)한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이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포장하면 제3102호에서 제3105호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 주 규정이 예외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법’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면, 예외법은 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일반적인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외례(예외규정)를 정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구별하는 실익은 ‘예외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예외규정을 임의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 이 주 규정은 문맥에서 언급하는 것에 따라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예외법을 확대해석하는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의 기본 취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양당사국의 상품교역을 촉진한다는 한–미 FTA 협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주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또 다른 실질적인 변형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면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될 소지가 분명하고 적용 기준의 명확화를 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FTA 협정의 목적으로 보아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끝으로 제20류 주의 규정이나 품목별원산지기준에 관하여 이 글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예에 따라 해석하면 적용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10) 한–미 FTA 협상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세번변경이 발생했더라도 상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에서 배제된다는 ‘불인정공정’을 도입하려는 반면에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양 당사국간에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불인정공정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해석의 단초를 찾을 수 있는데 다음에 설명하는 비료(제31류)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참고하면 이해가 되리라 여겨진다.